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1-13 (3호)
안전유형	심의

---

# 보호대상아동 · 청소년 통합 지원방안

---

2021.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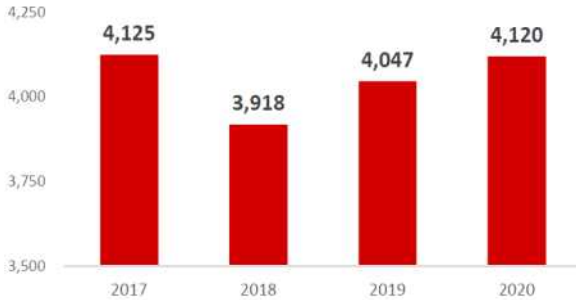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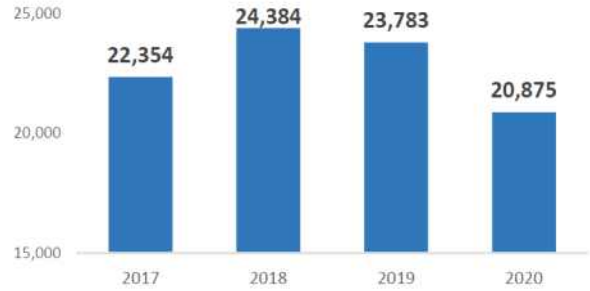
I . 추진배경 .....	1
II . 현황 및 문제점 .....	2
III . 추진방향 .....	5
IV . 추진과제(안) .....	6
V . 과제별 추진일정 .....	19

# I. 추진배경

- 우리나라에서 유기·학대·빈곤 등으로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은 매년 약 4천여명, 가정 밖 청소년은 약 2만명 이상 발생



< 보호대상아동 현황 (20, 복지부) >



< 9~19세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 (20, 경찰청) >

- 정부는 그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 지속
- 그러나, 여전히 부모의 돌봄과 국가의 지원을 모두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 존재
  - ※ (예) 유기아동, 법정 구속 부모 아동, 쉼터 퇴소 청소년 등
-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법정 연령이 일부 중첩됨에도 정책의 주무부처 등이 달라 정책이 이원적으로 운영 → 지원 격차 발생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보건복지부 소관	여성가족부 소관

-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틀을 넘어,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마련 필요

☞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생 예방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통합적 대책 마련

## II. 현황 및 문제점

### (1) 정책대상

#### 1] 보호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규모) ('18) 3,918명 → ('19) 4,047명 → ('20) **4,120명**
- (원인) ('20) **학대(1,767명, 42.9%)** > **부모이혼 등(539명, 13.1%)** > 비행·가출 등 (468명, 11.4%) > 미혼부모·혼외자(463명, 11.2%) > 부모사망(279명, 6.77%) > 부모 빈곤·실직(181명, 4.39%) > **유기(172명, 4.2%)** > **부모 교정시설 입소(8명, 4%)** 등
- (보호조치) ('20) **시설보호(2,727명, 66.2%)** > 가정위탁(1,305명, 31.7%) > 입양(88명, 2.1%)

#### 2] 가정 밖 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 <개정: '21.3.23., 시행: '21.9.24.>)

-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규모) ('20) **약 2만여 명의** 청소년이 가정 밖으로 이탈

※ 공식적인 '가정 밖 청소년' 현황은 부존재 ('21.3월 법령 개정, 관련 조사 미 실시) → 경찰청 실종·가출 현황\*, 청소년쉼터 이용 인원\*\* 등을 통해 유추

< \* 9~19세 경찰청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20, 경찰청) >

구분	'16	'17	'18	'19	'20
계 (명)	21,852	22,354	24,384	23,783	<b>20,875</b>

< \*\* 청소년쉼터 입소자 수 ('20) >

구분	쉼터			
	계	일시 (24시간~7일 이내)	단기 (3개월 이내)	중장기 (3년 이내)
실인원	<b>20,401 (100%)</b>	14,449 (70.8%)	5,274 (25.9%)	678 (3.3%)

- (원인) ('20) **가정문제\*(9,857명, 62.1%)** > 기타(4,113명, 25.9%) > 개인문제 (1,338명, 8.4%) > 또래문제(366명, 2.3%) > 학교문제(207명, 1.3%) (총 1.5만명 응답)

\* 부모 간 불화, 간섭, 무관심, 의견 차, 폭행, 학대, 가정해체 등

## [2] 현황 및 문제점

- **[가정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범위 한정적

※ (예) 임신부·만2세 미만 영아 가정 대상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 10개 시도 시행 중, 취약·위기가족 대상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한부모·조손가족 등 중심

⇒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이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 대상 교육 강화

- **[보호 여건]**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가정형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하나, 66% 이상의 아동이 시설 배치\*

\* '20년 기준, 아동의 보호조치로서 대규모의 인원이 수용되는 '시설(66.2%)'이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가정위탁'(31.7%)의 두 배 이상으로 여전히 많은 상황

### < 2019 감사보고서 (감사원) >

-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14~'18) 보호조치 실태조사 결과, 유기아동 962명 중 929(96.6%)가 입시보호되다가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로 보호조치, 가정보호조치 아동은 33명(3.4%)에 불과
- 시설로 최초 보호조치된 929명 중 차후 가정보호 변경 아동은 입양 111명, 가정위탁 17명으로 128명(13.8%)에 불과, 대부분(748명, 80.5%)은 그대로 시설에서 보호 중
- ▶ '19.4월 기준 가정위탁 대기 위탁부모는 206명으로 확인되는 등 추가 가정보호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만2세(24개월) 미만의 시설 보호 아동 755명 중 3명만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의뢰

⇒ 가정 외 보호가 불가피한 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형 보호(입양·가정위탁 등) 우선 배치 추진 및 모니터링

- 시설 배치 이후에도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원가정 복귀율·가정보호 변경 여부 지속 점검

- **[사각 지대]** 체포·법정구속된 부모의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등 미비

### < 2021 수용자 실태조사 결과 (법무부) >

- ▶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51,050명) 전수조사 결과, 응답자(37,751명, 73.9%)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48명(20.8%)이고 미성년 자녀의 수는 12,167명으로 조사됨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중 4,044명(51.5%)의 수용자는 교정시설 입소 후 자녀와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간접 연락, 미성년 자녀 80명은 혼자 생활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

⇒ 부모의 체포·법정구속으로 인해 혼자 남겨진 아동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응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 **[지원 격차]** 보호대상아동에 비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 부족, 동일 연령이라도 어느 보호체계에 편입되는지에 따라 지원 격차 발생

※ (예)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자립정착금(일시금, 500만원 이상), 자립수당(월 30만원) 등을 받게 되나, 쉼터 퇴소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립수당만 지급 (자립정착금은 일부 시도만 자체 지급)

※ **홀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청소년쉼터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주요 가출 사유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 가정 내 학대, 폭력, 방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제도와 견주어 보았을 때,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제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도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과 상당한 수준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정 밖 청소년 역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은 동일하므로, 동일 수준의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 단계적 강화

□ **[통합 관리]** 아동,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복지부, 여가부)가 상이하여 통합 사례관리 미흡,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의 비연속성 발생

※ (예) 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해당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 연계 부족

→ 지속 사례관리가 필요한 만 13세 이상 아동은 청소년안전망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가능하나, 청소년안전망팀은 전국 15개이며 희망복지지원단은 성인·노인 중심임

< 현장의 목소리 (청소년쉼터 원장) >

▶ “드림스타트(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드림스타트 종료하면 애들이 다 완전히 망가져서 또다시 오게 된다. 그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너무 많다. 중학생까지 3년만이라도 더 팔로우업(follow-up)을 해서 위기아동·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 수요자 입장에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처·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협의 제도 마련

### Ⅲ. 추진방향

#### 비전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 목표

- ▶ '사전예방·보호·사후관리'의 보호단계별 사각지대 방지
- ▶ 아동·청소년 보호의 지원 격차 해소 및 통합적 지원 강화

#### 1 사전예방

-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추진
- ②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 확대
- ③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 ④ 부모교육 강화

#### 2 보호서비스 제공

- ⑤ 원가정 보호 및 복귀 지원
- ⑥ 유기아동 출생등록 공적 책임 강화
- ⑦ 유기아동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 ⑧ 보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의 질 제고
- ⑨ 법정 구속·체포 부모의 아동 보호

#### 3 사후관리

- ⑩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 ⑪ 쉼터 청소년 진학 지원 강화
- ⑫ 쉼터 청소년 취업 지원 강화
- ⑬ 가용자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 4 추진체계 정비

- ⑭ 아동·청소년 보호 전담인력 확보
- ⑮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연계
- ⑯ 위기아동 정보연계 협의체 확대

#### 추진 체계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촘촘한 보호서비스 제공

## IV. 추진과제(안)

### 1. 사전예방 :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원가정 해체 방지

- ▶ 영·유아 양육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조기 개입 강화
- :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추진, ②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 확대, ③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④ 부모교육 강화

#### 1]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추진

- (현황) '20년부터 임신부·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상담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 중
- \* ('20) 8개 시도 (21개 보건소) → ('21.7월) 10개 시도 (29개 보건소)

#####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 (목적)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영아기부터 건강한 출발 지원 및 부모 양육역량 강화
- (개요) 보건소에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한 임신부·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모형) 임신부 등록 → 서비스 신청 → 심리사회적 평가\* → 건강위험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등에 따라 일반군/고위험군 분류 → (일반)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 / (고위험군\*\*)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상담·교육 (평균 25~29회)

\* (심리사회적 평가)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 우울 등 심리상태검사, 흡연·음주습관, 양육환경, 학대경험 등

\*\* (고위험군) 산모우울·불안, 청소년부모, 미혼모, 장애산모, 트라우마 관련 경험 등

- ☞ (개선) 1·2차 시범사업('20~'21)을 통해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22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추진

\* ('21) 29개소 → ('22) 50개소 → ('24) 전국 보건소

※ '20년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기본방문 만족도' 평균 9.3점(10점 만점)으로 만족도 높은 편 (서울대산학협력단, 1,399명의 조사 대상자 중 674명 응답(48.2%))



## 2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 확대

- (현황)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12~)'을 추진 중이나, 주 대상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한정적\*

\* 가족역량강화지원 대상: ① 취약가족(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② 긴급위기가족(재난·사고 등 위기사건 직면), ③ 이혼 신청 중인 가족 (선택사업)

- 한편,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지원' 항목이 신설됐으나(21.3.23.)\*, 아직 청소년부모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은 미비\*\*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정비 추진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7.5.)

\*\* 현행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산·출산 의료비(120만원 이내) 지원' 중이나, 의료비 이외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공적 차원의 개입·사례관리 등 지원 미흡

- ☞ (개선) 기존에 한부모·조손가족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12~) 대상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22~)\*** 적극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 79개소 → (21) **88개소** → (22) **98개소**

\*\* (예) '키움보듬이'가 가정방문하여 생활도움 제공(긴급일시돌봄, 가사, 정서지원 등) 등

###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여성가족부)

- (목적)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 사례관리,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 (모형) ① 대상자 발굴 → ② 초기상담 → ③ 사례관리 등록 → ④ 욕구 및 강점사정 → ⑤ 서비스 계획 → ⑥ 서비스 제공 → ⑦ 서비스 점검 → ⑧ 서비스 평가 → ⑨ 서비스 종결 → ⑩ 사후관리
- (개선) 사업 대상에 청소년부모 포함하여 통합사례관리 지원 (22~)

## 3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 (현황) 복지 서비스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중(18~)

\*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 또는 학대 의심 시 아동보호체계로 연계하는 시스템

- 또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해 365일·24시간 청소년상담채널\*을 운영 중이나, 별도의 전화 상담 전담인력이 없으며 사이버상담 대응 부족

\* ('20) 936,037건 (전화 425,686건, 모바일 189,609건, 사이버 320,742건)

※ 전국 238개 청소년복지센터 운영 인력이 전화 상담 업무 병행 중이며, 사이버상담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연(14.2분, 수용률 40.6%(‘20.12월 기준)) 감축 시급

☞ (개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분기별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 ('21.하~)

- 위기아동을 위한 필요 서비스 연계\* 및 학대 의심 시 아동보호체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지원 필요 아동은 지자체 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학대피해 아동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

- 또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 1388 통합콜센터' 설치 추진, 사이버상담 인력 충원 검토

#### 4 부모교육 강화

- (현황) 다양한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나, 실제 위기 가정은 교육 이수에 소극적일 가능성

\* ('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22개소, 169,788명), 육아종합지원센터(111개소,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20편), 건강보험공단 연계 임신·출산 진료비 청구 시 부모교육 등 정보 제공(월 2만여건)

☞ (개선) 위기가정 등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아동수당·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정보제공 영상 자동 연계('21.하)

\* 기본 양육철학, 아동권리에 대한 메시지 등을 전달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홈페이지 등 정보 제공

- 변화하는 양육환경과 부모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콘텐츠의 주제·방식을 다변화하고\*, 참여유인 제공\*\*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양육 스트레스 관리' 신규 부모교육 과정 실시('21.7.~),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등 총 5편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21.10.~) 등

\*\* (예) 온라인 부모교육 이수 시 놀이키트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가의 비대면 놀이상담을 통해 집콕 놀이 활성화 지원 등

-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한 부모교육 확대 추진

## 2. 보호서비스 제공 :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및 보호 여건 개선

- ▶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입양/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 순으로 조치
- : ① 원가정 보호 및 복귀 지원, ② 유기아동 출생등록 공적 책임 강화, ③ 유기아동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④ 보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의 질 제고, ⑤ 법정 구속·체포 부모의 아동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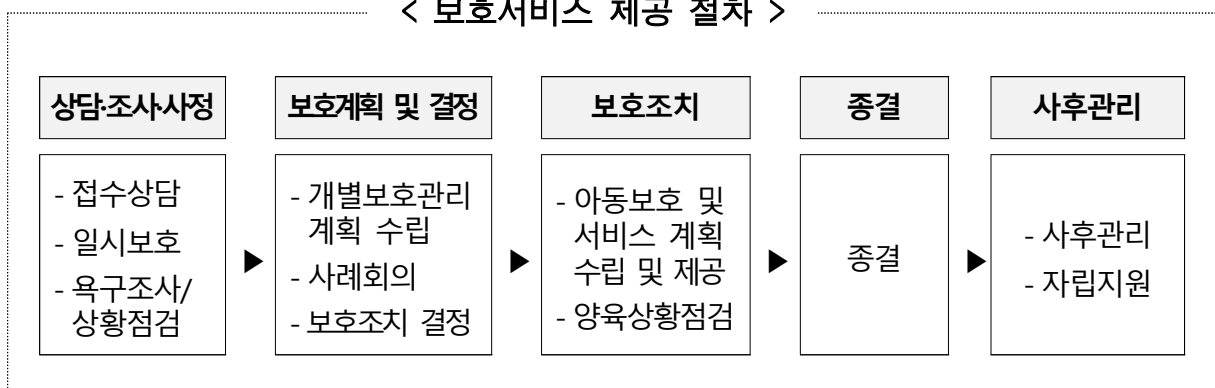
### 1 원가정 보호 및 복귀 지원

- (현황) 「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원가정 보호'가 최우선 원칙이나, 원가정 보호·복귀가 미흡한 실정

#### < 「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보호서비스 제공 절차 >



- ☞ (개선)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심실천교육 강화 및 초기 부모·원가정 상담 지침 구체화

\* 보호대상아동발생 시 아동상황점검, 친부모상황점검을 실시하며,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 '부모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파악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원가정 복귀 희망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확대

※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개요) 다양한 이유로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청소년이 원만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별 가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부모 상담·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 시설 배치 이후에도 원가정 복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가정 교류 관련 프로그램\* 지속 실시

\* (예) 아동의 적응·발달 상황을 면담, 전화통화 등을 통해 부모와 정기적으로 공유 등

- 원가정 복귀 이후 사후관리(1년 4회\*)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타 사업('드림스타트' 등)과 연계하여 두터운 사후관리 제공

\* 복귀 후 7일 이내 1회차, 1개월 이내 2회차, 6개월 이내 3회차, 1년 이내 4회차 규정

## ② 유기아동 출생등록 공적 책임 강화

- (현황) 원가정 확인이 어려운 유기아동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생등록이 필요\*하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제3항 사·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필수적인 예방접종 및 건강보험혜택 등을 받기 어려움, 각종 복지혜택·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며 불법입양·인신매매 등 범죄 노출 위험 존재

- 출생등록 주체와 관련된 규정이 모호\*하여 출생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개선('21.6.30.~)

\* ('20년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의 관할 사·군·구 담당자는 보호조치 후 즉시 성분창설을 위한 법원 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베이비박스 관할인지, 일시보호시설 관할인지 모호)

→ 유기아동 성분창설의 주체는 '유기아동 발생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하도록 규정

<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21.6.30.~) >

- 시(구)·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 성본창설의무가 있는 시(구)·읍·면의 장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의 관할 시(구)·읍·면에 아동의 성본창설을 요청할 수 있음
- 성본창설을 위한 절차 예시
  - ① (아동보호과) 관할 경찰서에 '요보호 아동(기아)의 성본창설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② 경찰서에서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공문 회신 → ③ (민원행정과) 관할 가정법원에 '요보호아동 성본창설 협조요청' 공문 발송 → ④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 허가 심판문' 공문 회신 → ⑤ (아동보호과) 일시보호시설 등에 성본창설 심판문 공문 발송

☞ (개선)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개선사항 안내·모니터링 강화

- 업무매뉴얼 개선 이후 지자체의 성본창설 의무 회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가 없는지 지속 점검 실시

3] 유기아동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 (현황) 유기아동 배치 시 가정형 보호체계에 우선 배치함이 원칙\*이나, 전국 위탁가정 통합 관리 미흡으로 시설 배치 경향  
\* 유기아동이 대규모 양육시설에 배치되면 성장과정에서 1:1 개별 양육과 보호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 경계선지능, 심리정서적 문제 양산

< 현장의 목소리 (가정위탁지원센터) >

"유기아동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는 없었고, 그러다보면 교육을 이미 이수하신 위탁가정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끔 전화오세요. '아이가 없나요? 저희는 아직 의뢰받은 게 없네요'라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요."

☞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현황을 공유하여 유기아동과 위탁가정을 적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유기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 우선 보호되도록 조치 및 모니터링
- 시설 배치 이후에도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최소 3개월마다)을 통해 필요 시 가정보호(입양,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변경 실시

※ ('21.6.3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아동에 대한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입양) 우선 원칙 명시, 지자체별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 보호조치의 적절성 심의

#### 4 보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의 질 제고

- (현황) 청소년 복지시설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시설비 지원에서 상대적 소외\*되어 주거 여건이 열악한 상황
  - \* 타 생활형복지시설(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은 매년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 지원 중이나, 청소년 복지시설은 '20년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일시적 기능보강 지원 (단년도, 국비 20억원)에 그침
-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의 경우 급식비·피복비 등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지원되나, **사업비 부족**으로 낮은 급식비 단가(1식 평균 2,644원) 등 문제 발생
  - ※ 쉼터(10인 기준)당 사업비로 약 43백만원(자립지원관의 경우 72백만원) 지원 중이나, 급식비 외 생계비, 피복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
- ☞ (개선) **청소년 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 기본적 생활여건인 주거·급식 등 지원 강화 검토**

#### 5 법정 구속·체포 부모의 아동 보호

- (현황) 부모의 법정 구속·체포 등으로 아동만 남겨진 경우에 대한 대처 및 보호조치 미비
  - ※ ('21,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48명(20.8%)이고 미성년 자녀는 12,167명 → 주 양육자는 수용자의 배우자(6,416명, 81.8%), 조부모, 위탁시설 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80명은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20.9.14.) >

#####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재판, 교정, 범죄예방 등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가. 체포 및 구속·구인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보호와 아동보호체계 연계

※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시 남겨진 수용자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한 지침 마련 권고

##### 나. 수용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양육 및 접견, 부모관계 회복 지원

※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 접견 장소, 시간·횟수, 자격·대상 확대 관련 법 제·개정 권고

##### 다. 수용자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중장기 계획 수립

※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를 마주하는 관련 종사자에 대해 제도화되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아동권리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수용자자녀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권고

- ☞ (개선) 아동의 보호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법무부·복지부의 정보 공유 및 절차 관련 매뉴얼 마련 등 지원 강화
- 아동의 보호자가 체포·구속 수사·교정시설 입소 시, 수사관·교정 공무원이 아동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요청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
- 연 1회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녀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 교정청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지원 제공
- ※ ('21.하) 서울지방교정청 시범 운영 → ('22) 4개 지방교정청 확대 운영
- 부모 구속 등으로 아동만 남겨지는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해 업무 관련 지침·매뉴얼 등에 반영하고, 관련 인력 교육 철저
- ※ (예) (호주) 교도소 직원 대상 부모가 구금된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대한 교육 실시, (영국) 수용자 자녀와 접촉하는 모든 전문가·관련자를 위한 교육·훈련 워크숍 제공

**< (예) 업무 매뉴얼 (안) >**

**<경찰청>**

- 아동의 보호자를 체포·구속 수사 시 △ 체포·구속된 보호자 외 아동을 보호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의 체포·구속으로 아동의 양육 및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수사관이 인지하거나 피의자가 요청 시
- 수사관은 대상자에게 지자체 아동보호서비스를 안내하고, 동의 시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공문 및 구두로 통보

**<법무부>**

- 수용자 입소 시 아동복지법 제15조의 아동보호제도 안내하고 수용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항 지자체 통보(형집행법 제53조의2)
- 신입 수용자 입소 시 미성년 자녀의 현황 파악 실시, 이와 별도로 연 1회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 설문조사 실시
-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지자체 보호서비스와 연계한 지원 시행
- '토요 아동접견의 날' 시행을 통해 학령기에 있는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 보장

**<복지부>**

- 지자체 아동보호팀은 해당 아동의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서비스 지원

### 3. 사후관리 : 보호 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퇴소 또는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

: ①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② 쉼터 청소년 진학 지원 강화, ③ 쉼터 청소년 취업 지원 강화, ④ 가용자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 1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 (현황) 보호종료아동과 비교하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등에 대한 자립 지원 미비, 특히 **공적 자산형성 기회**(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부족

	보호종료아동	쉼터 퇴소 청소년
디딤씨앗통장* (평균 447만원)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 아동 (※쉼터 청소년의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 아동의 만 12~17세 가입 가능)	
자립정착금** (500만원 이상)	○ (17개 시도 전부 지급)	△ (일부 시도만 지급)
자립수당*** (월 30만원)	○ (‘19년~) * 지급기간 3년→ 5년(‘22)	○ (‘21년~) * 지급기간 : 3년

\*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개인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5만원까지 가능) (‘21년 기준)

\*\*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0만원 이상 일시금 지원

\*\*\*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 (개선)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 지원 우수사례 확산

#### < 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

- 제주 : ‘21년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퇴소해 자립하는 경우, 주거정착금 500만원 지원 (‘20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방비 투입), 도내 청소년 쉼터 4곳을 사례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심리적 자립 지원
- 경기 : ‘22년부터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자립두배통장’ 제도 추진  
(※ 월 10만원씩 6년간 저축할 경우 2,160만원 마련)



## ② 쉽터 청소년 진학 지원 강화

- (현황) 쉽터 입·퇴소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원 부재로 진학 준비 및 안정적인 학업 매진이 어렵고 제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

### < 2018년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의 만 15세 이상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 (총 124개소, 730명 참여),
  - (희망교육수준) 고졸 이하(39%) > 4년제 대졸 (29%) > 전문대졸 (23.6%) > 대학원이상 (8.4%)
  - (3년 이내 진로 계획) 취업(50.1%) > 상급학교 진학 (30.7%) > 아직 진로 결정하지 못함(10.8%)

- ☞ (개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쉽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하고,
    -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대상에 청소년 쉽터 입·퇴소자를 포함
- \*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등

## ③ 쉽터 청소년 취업 지원 강화

- (현황) 쉽터 퇴소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 등 경제 활동이 필수적이나, 쉽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 미비

### < 2018년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의 만 15세 이상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 (총 124개소, 730명 참여),
  - (취업준비 지원) 매우 필요 (38.2%) > 약간 필요 (35.1%) > 별로 필요하지 않음 (13.8%) > 전혀 필요하지 않음 (12.9%)
  - (취업정보 제공) 매우 필요 (40.8%) > 약간 필요 (35.8%) > 별로 필요하지 않음 (12.6%) > 전혀 필요하지 않음 (10.8%)
  - (취업 후 사후관리) 매우 필요 (36.5%) > 약간 필요 (34.6%) > 별로 필요하지 않음 (15.2%) > 전혀 필요하지 않음 (13.7%)

- ☞ (개선)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통대상에 쉽터 입·퇴소 청소년 포함

- \* ①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②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③ (이수 시)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만 18세~34세 대상)

- 쉼터 청소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적극 발굴 및 연계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사회적기업 취업 시 취약계층 범주에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소년\*'도 포함 추진

\* (예) 청소년 쉼터에서 2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4 가용자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 (현황) 저소득층·취약계층 청소년(청년)을 위한 소득·주거·취업·교육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나, 홍보 미비로 활용 저조한 경우 존재

☞ (개선) 보호대상아동·가정밖청소년이 활용 가능한 전국 단위 자원 목록을 앱 등을 활용하여 시설 등에 정보 상시 제공

**< 8대 영역 활용 가능 자원(안) >**

<b>1 소득</b>	디딤씨앗통장(CDA),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b>2 주거</b>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임대주택, 전세주택 지원사업, 청소년자립지원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구하기 계약 실무, 청년우대 주거대출
<b>3 금융</b>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용카드 발급·보험 가입·은행 거래, 금융사기 피해예방
<b>4 취업</b>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 아카데미, 폴리텍 전문기술과정,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채용정보탐색, 진로선택
<b>5 진학</b>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대학진학정보
<b>6 건강</b>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심리정서분야 지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b>7 관계</b>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 경험 멘토), 자조(self-help) 모임 및 네트워킹 형성 지원
<b>8 일상</b>	보건복지콜센터 129, 청소년상담 1388, 법률지원, 문화누리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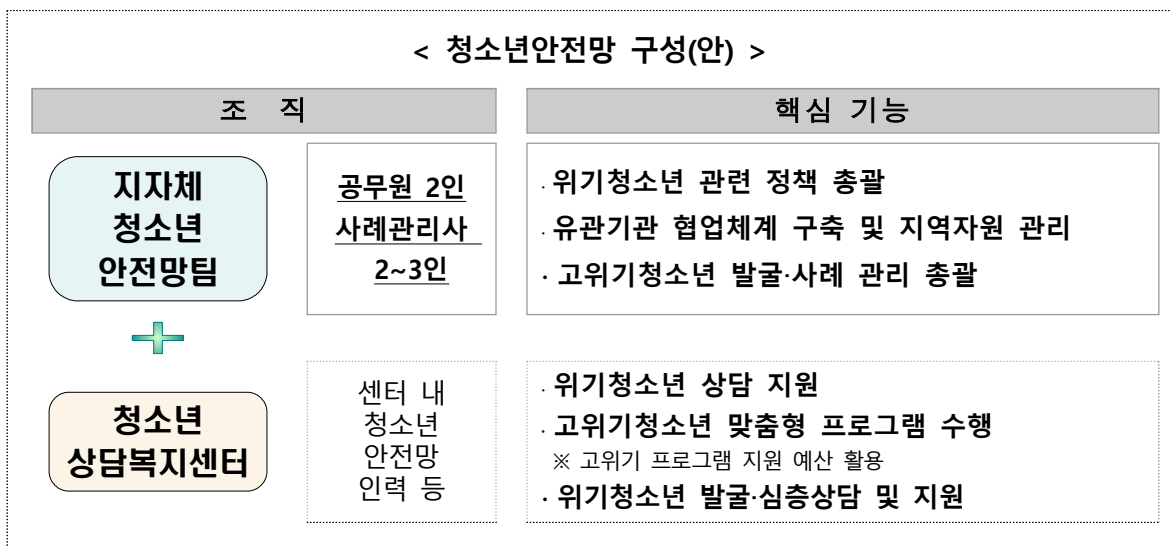
## 4. 추진체계 정비 : 전담인력 확보 및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연계 강화

- ▶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연계 강화

: ① 아동·청소년보호 전담인력 확보, ②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연계, ③ 위기아동 정보연계 협의체 확대

### 1] 아동·청소년 보호 전담인력(지자체) 확보

- (현황) 보호대상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력 부족으로 법과 현장의 괴리 및 통합사례관리 미흡
  -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접수상담, 조사·사정, 보호계획 수립, 서비스 계획 확인,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나, '21년 6월 기준 총 334명
  - ※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중이나, 위기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팀'은 전국 15개 시군구 운영



- ☞ (개선) 보호대상아동·가정 밖 청소년 현황,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인력 확충 추진
  -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유도
  - ※ (예) 아동정책분야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처우현황을 반영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장관표창 등 수여

## ② 위기아동 · 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연계

○ (현황) 아동복지시스템 및 청소년복지시스템 분산 운영에 따른 수요자 중심 사례관리 미흡, 지원 중복 및 누락, 비연속성 발생

☞ (개선) 분산된 아동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하고 공통 DB를 보유하기 위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 ~'22)

\* 현재 아동복지시스템은 ▲사회보장, ▲아동학대, ▲입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자립지원 등으로 10여종으로 분산 구축 → 아동 개인을 중심으로 급여,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등 모든 정보 재구성 및 이력관리

- 각각 운영되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별 정보망\*을 통합·공유·연계 하기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여가부, ~'23)

\*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자립지원관 등 시스템 분산 운영 → 학교·경찰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서비스 연계

-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고위험군 아동)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양 부처 시스템 간 표준 정보연계 절차 마련

### < (예) 시스템 간 정보 연계 필요사항 >

- ▶ **드림스타트 사업:** (현행) 복지부 드림스타트 수혜정보를 공문으로 여가부 청소년안전망에 제공 → (개선) 여가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간 연계
- ▶ **입퇴소 관리:**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이동 시에도 입퇴소 정보(입소기간 등)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 절차 마련

## ③ 위기아동 정보연계 협의체 확대

○ (현황) 기초지자체 내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위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 중이나, 청소년업무 관계자 참여 부족

\* 시군구,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석 (필요 시 관련자 추가 참석 가능)

☞ (개선) 청소년업무 논의 및 통합사례관리 필요 시, 정보연계협의체에 청소년업무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반영 및 안내 철저

\* 청소년안전망 업무 담당공무원, 청소년안전망 사례관리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등

## V. 과제별 추진일정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b>1. 사전예방 :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원가정 해체 방지</b>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추진	'21.하	복지부
②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 확대	'22.상	여가부
③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21.하	복지부·교육부·여가부
④ 부모교육 강화	'21.하	복지부·여가부
<b>2. 보호서비스 제공 :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및 보호 여건 개선</b>		
⑤ 원가정 보호 및 복귀 지원	'21.하	복지부·여가부
⑥ 유기아동 출생등록 공적 책임 강화	'21.하	복지부
⑦ 유기아동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21.하	복지부
⑧ 보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의 질 제고	'22.상	여가부
⑨ 법정 구속·체포 부모의 아동 보호	'21.하	경찰청·법무부·복지부
<b>3. 사후관리 : 보호 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b>		
⑩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22.상	여가부
⑪ 쉼터 청소년 진학 지원 강화	'22.상	교육부·여가부
⑫ 쉼터 청소년 취업 지원 강화	'22.상	고용부·여가부
⑬ 가용자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21.하	복지부·여가부
<b>4. 추진체계 정비 : 전담인력 확보 및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연계 강화</b>		
⑭ 아동·청소년보호 전담인력 확보	'22.상	복지부·여가부
⑮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연계	'21.하	복지부·여가부
⑯ 위기아동 정보연계 협의체 확대	'22.상	복지부·여가부

추진과제	현행	개선
<b>1. 사전예방 :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원가정 해체 방지</b>		
생애 초기 건강관리	▶ 10개 시도, 29개 보건소 실시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 실시
가족역량강화지원	▶ 한부모·조손가정 등 지원	▶ '청소년 부모' 포함 지원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 청소년상담 전문인력 부족	▶ 분기별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 ▶ '청소년상담 1388 통합콜센터' 설치, 사이버상담 인력 충원
부모교육	▶ 위기가정 부모교육 접근성 저하	▶ 아동수당 등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정보 영상 자동 연계 ▶ 콘텐츠 다변화, 참여유인 제공
<b>2. 보호서비스 제공 :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및 보호 여건 개선</b>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	▶ 원가정 보호·복귀 미흡	▶ 초기상담 시 원가정 복귀 노력 등을 파악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유기아동 출생등록	▶ 출생등록 지연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개정	▶ 지자체의 매뉴얼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출생등록 신속화
유기아동 가정형 보호	▶ 위탁가정 광역 단위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전국 위탁가정 현황 공유
보호 인프라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주거·급식 지원 미비	▶ 노후시설 보수 등 기능보강 지원, 급식비 증액 등 청소년 건강 지원
법정 구속체포 부모 아동	▶ 부모의 법정 구속·체포로 아동 혼자 남겨진 경우 대응 미비	▶ 경찰청·법무부·복지부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즉각 보호 ▶ 연1회 수용자 대상 자녀 현황 조사 및 수용자 자녀 지원팀 운영

추진과제	현행	개선
<b>3. 사후관리 : 보호 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b>		
경제적 지원	▶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일부 지자체 지원	▶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등 자립지원 우수사례 확산
진학 지원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의 진학 지원 부족 및 학업 매진 어려움	▶ 쉼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 확대 협의 ▶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대상에 쉼터 입·퇴소자 포함
취업 지원	▶ 쉼터 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 미비	▶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통대상 및 사회적기업 취업 시 취약계층 범주에 '쉼터 입·퇴소 청소년' 포함 ▶ 쉼터 청소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적극 발굴
홍보 및 네트워킹	▶ 저소득층·취약계층 청소년(청년) 대상 운영 중인 제도 홍보 미흡	▶ 전국 단위 자원 목록을 앱 등으로 제작·상시 제공
<b>4. 추진체계 정비 : 전담인력 확보 및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연계 강화</b>		
보호 전담인력	▶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아동보호인력 부족 ▶ 청소년안전망팀 15개소 운영	▶ 아동보호전담요원 단계적 확충 ▶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운영 검토
통합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 분산 운영에 따른 중복 및 누락, 통합사례관리 미흡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위기청소년 분류기준 마련 및 시스템 간 정보연계 표준 절차 마련
정보연계협의체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청소년업무 관계자 참여 부족	▶ 청소년업무 관계자 참석 가능하도록 매뉴얼 반영 및 안내 철저